

제234회 영등포구의회
2021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방재에 관한
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권영식 의원 발의】



2021. 11. 23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방재에 관한
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419호로 2021년 11월 15일 권영식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지진재해에 대한 영등포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, 지진방재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 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규정 (안 제3조)
- 다.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(안 제4조)
- 라. 지진방재 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시 반영

다. 입법예고 (2021. 11. 12.~ 11. 16. / 5일 간)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지진재해에 대한 영등포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, 지진 방재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조례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」이고 6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.
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에 따라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, 지진 방재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,

- 상위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,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·지진해일의 관측·예방 대비 및 대응, 내진대책,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
-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근거는 타당하며, 영등포구가 보다 체계적인 지진방재시행 계획과 각종 실효성 있는 방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

제3조(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(이하 “지진·화산재해”라 한다)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,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·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·예방·대비 및 대응, 내진대책, 지진·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,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·화산재해의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국제적 공조, 지진·화산재해와 관련된 기술과 정보의 공유,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③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(이하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지진·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(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·추진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,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지진방재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지진방재업무의 체계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
3. 지진방재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

4. 지진방재업무의 국내외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방재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시·도지사등”이라 한다)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.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.
 -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등은 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·추진하고 그 추진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

제8조의2(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소관 분야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추진방향
2.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
3.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
4. 연도별 추진계획 및 자원조달 계획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